

##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·관리지침 공고

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161호로 수립 고시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정비사업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. 7. 1.

### 대전광역시장

#### 1. 지침의 개요

- 목적 : 2030 도정 기본계획 수립,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정함
- 대상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예정구역
- 운영 : 정비사업에서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본계획과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

#### 〈지 위〉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부합하는 하위계획

#### 2. 지침의 주요내용

##### 가. 도심지역 특화계획

- 안정적 도심주거기능 확보를 위한 특화계획
- 도심기능 유지를 위한 특화계획
- 기반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특화계획
- 포용성장을 이끄는 도심공간 창출을 위한 특화계획

## 나. 주거지역 특화계획

- 대중교통중심의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계획

## 다. 인센티브

- 인센티브 총괄
-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
- 녹색건축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
- 조정식재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
- 재활용 자재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
- Social Mix에 따른 인센티브
- 임대주택 건립 및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인센티브
- 소형주택, 도심활성화시설, 사회적 배려주택 인센티브 적용방법 설명

## 라. 관리운영계획

- 정비계획의 경과조치 등 설명
- 정비계획 수립 입안 시 주민제안방법 명시

## 마. 기타사항

-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지정 기본계획과 금회 기본계획의 적용방법 설명  
※ 지정 기본계획 : 주택재개발기본계획(2000),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
- 부칙 : 경과조치 등을 정함

## 3. 열람 장소

- 대전광역시청 :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개발과(270-6561)

※ 「2030 대전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·관리지침」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jeon.go.kr>)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hreas.daejeon.go.kr>)에서 확인가능 함